

	<h2 style="margin: 0;">교양교육 운영규칙</h2>		규정번호	3-4-31	
			제정일자	2017. 11. 10	
			개정일자	-	
			개정번호	ver .0	총페이지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고 한다) 학칙 제30조와 교육과정편성및운영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교양교과의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양 교육목표 및 인재상) 교양교육은 학칙 제1조의2에 기술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천 인성, 평생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기본 소양 및 외국어 능력 등의 직업기초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
제3조(교양교과 편성 원칙) ① 교양교과는 교양 필수와 교양 선택으로 구분한다.

② 교양교과는 다음 각 호의 편성 원칙을 충족하도록 편성해야 한다.

1. 교양교과를 4개 영역(인성, 건강체육, 실용교양, 글로벌문화)으로 구분한다.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각 학과의 교육목표에 따른 인재양성에 필요한 NCS직업기초능력에 대하여는 각 학과의 요청에 의해 교양 필수과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3. 인성분야의 실천인성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인성교과목을 교양 필수과목으로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한다.
4. 산업사회의 적응력을 함양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하여 건강체육 교과목을 교양 필수과목으로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한다.

제4조(교양교육 평가) ① 교양과장은 매년 8월에 교양교육 운영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.

② 교양과장은 평가결과를 교양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, 교양교육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후 개선사항 도출한다.

③ 심의결과는 다음 학년도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에 반영한다.

제5조(교과목 신설 및 폐지) ① 교양교육운영위원회는 제4조 교양교육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과목의 신설 또는 폐지 여부를 심의한다.

1. 신설 교과목은 산업체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분석이나 기존 교양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도출되어야 하고, 제2조에 기술된 교양 교육목표 및 인재상에 부합하여야 한다.
2. 교양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결과 교양교육 목표나 인재상에 부합하지 않거나 상대적 인 중요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을 폐지할 수 있다.

② 교양 교과목 신설 및 폐지는 교양교육운영위원회 및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. 단 NCS직업기초능력 교과목은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, 직업기초능력및기초학습능력향상위원회 및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